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건의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2월 16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건의서

청원인	주소 : _____
	성명 :
건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2월 16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오상민 외 8인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 18회 임시회의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현행법상 법적 제재를 인터넷 개인 방송자에게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방송사업자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방송사는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까 징계를 내리지 않거나 약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방송자들은 건전하지 않은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간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방송자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터넷 방송의 현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방송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저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 21조 7항을 추가한다.</p> <p>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p> <p>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32조, 제33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p> <p>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본다. <개정 2014.12.30.></p> <p>④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의2 및 제83조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0.></p> <p>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의 제출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p> <p>⑥ 재난방송에 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p> <p>⑦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방송 내용이 방송법 제33조2항의 심의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p>	

소개의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최근 들어 아프리카 TV와 같은 인터넷 방송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인 ‘꿀TV’ 모바일앱이 5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는 등 인터넷 방송의 열기는 뜨겁다. PC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은 지상파 방송에서 볼 수 없던 신선한 내용과 콘텐츠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누구나 쉽게 개인 방송자(BJ)가 되어 방송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이유이다.

하지만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기존 방송과는 달리 비속어 사용이 자유롭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다. 장애인 비하 발언을 개인 방송자와 IS의 파리 테러를 페러디한 경우도 있었고, 방송을 통해서 도박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강력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개인 방송자는 최고수준의 징계가 시정권고에 그친다. 법적강제성을 지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시청자 수 또한 기성방송 못지않게 많고 주된 시청자의 연령대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인터넷 방송이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

개인의 자유로운 방송을 보장하며 등장한 인터넷 방송은 각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PC의 평균적인 성능이 향상되면서 시청자수, 방송자수, 그 규모에 있어 최근 아프리카 TV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TV의 일평균 시청자수가 300만 명으로 20만인 IPTV의 일평균 시청자수의 15배에 이르고 지상파 채널에도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란 이름으로 진출해 큰 인기를 누릴 만큼 성장했다.

이러한 과급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방송자들의 잘못된 방송이 이어지는 것은 개인 방송자들의 이러한 방송이 환전이 가능한 인터넷상 화폐 이른바 ‘별풍선’을 얻기 위한 것인데, 해당 방송사의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터넷상 화폐의 결제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개인 방송자를 선불리 징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 스스로도 이에 대해 묵인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에게 법적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개인 방송자에 대해선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에 자체적인 심의와 징계를 맡기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사에게 각각의 개인방송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맡기는 것은 효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각 방송의 주체는 방송사가 아닌 각각의 개인 방송자이므로 효용성 측면에서도, 논리적으로도 해당법안은 개정이 필요하다. 이 법안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개인 방송자를 직접 제재 할 수 있고,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아가 올바른 인터넷 방송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2. 주요골자

청소년의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 21조 7항을 추가한다.

-신구문대조표-

현행	제정안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p>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32조, 제33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p> <p>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본다. <개정 2014.12.30.></p> <p>④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의2 및 제83조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국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0.></p> <p>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의 제출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p> <p>⑥ 재난방송에 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p>	<p>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32조, 제33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p> <p>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본다. <개정 2014.12.30.></p> <p>④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의2 및 제83조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국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0.></p> <p>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의 제출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p> <p>⑥ 재난방송에 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p> <p>⑦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방송 내용이 방송법 제33조2항의 심의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p>
---	--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서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